

〈자료〉

- 단독주택표준설계도서공고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단독주택표준설계도서공고

건설부공고제65호

건축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작성한 단독주택(도시형·농촌형)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공고한다.

관계도서는 각시·도 및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이용자 및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관계도서 생략)

1983년 11월 9일

건설부장관

단독주택(도시형·농촌형) 표준설계도서

도 서 명	형 별 번 호	도 서 의 종 류
단독주택(도시형·농촌형) 표준설계도서	83-17-다	1. 도서의목록표
	83-20-다	2. 투시도
	83-22-다	3. 평면도
	83-23-나	4. 입면도
	83-23-다	5. 단면도
	83-24-나	6. 바닥틀도

83-24-나	7. 위생배관평면도	
단독주택(농촌형) 표준설계도서	83-15-가	8. 난방배관평면도
	83-17-가	9. 전기평면도
	83-17-나	10. 분전반배선도및부하일람표
	83-19-가	11. 실내재료마감표
	83-19-나	12. 단면상세도
	83-22-가	13. 창호도
	83-22-나	14. 부분상세도
	83-23-가	15. 철근각부배근도
	83-24-가	16. 위생기구범례표
83-24-나	17. 위생기구일람표	
	18. 물탱크상세도	
	19. 전기설비범례및주기	
	20. 조명기구모양도	
	21. 특기시방서	
	22. 소요자재명세표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부령제365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3년 12월 2일

건설부장관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부대시설)”을“(기타 부대시설)”로 한다.

제3조의 제목“(복리시설)”을“(기타복리시설)”로 하고, 동조 본문 및 각호를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조제5호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유아교육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유치원
2. 새마을유아원

제24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8조의3 제1항에서 “최초로 공급한 날”이라 함은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 개시일을 말한다.

[별표6]중 2. 시멘트가공제품(시멘트벽돌·시멘트블록·시멘트기와) 생산업의 등록기준세목란의 다. 기타 시설란중 (1)대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

(가) 시멘트벽돌 또는 시멘트블록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이상. 다만, 보일러실을 포함하여 99제곱미터이상의 증기양생실과 1톤이상의 보일러 1대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천980제곱미터이상, 9만매이상의 시멘트벽돌을 다층으로 양생할 수 있는 시설(눅혀서 양생하는 경우에는 층간 높이 18센티미터이상, 세워서 양생하

는 경우에는 층간 높이 30센티미터이상)을 보유하거나 3만매 이상의 시멘트블록을 다층으로 양생할 수 있는 시설(층간 높이 30센티미터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2천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시멘트기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1천650제곱미터이상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중 4.부대시설 설치계획의 기재상 주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재상 주의사항

1. ③란에는 영 [별표 6]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에 따른 설치계획을 기재합니다.
2. ④란에는 세대별 용량과 적산전력계 설치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3. ⑤란에는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의 설치개소·폭·길이 등을 기재합니다.
4. ⑦란에는 세대별 전화국인입선의 설치여부와 공중전화의 설치여부를 기재합니다.
5. ⑬란에는 기존시설 단지로부터의 거리, 확보된 대지의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8호의 2서식]중 5. 복리시설 설치계획의 기재상 주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에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치

계획을 항목별로 명기합니다.

2. 시설설치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각란에 그 사유를 명기합니다.

[별지 제28호의 2 서식]중 6. 일반분양시설 설치 계획란의 하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에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치계획을 항목별로 명기합니다.
2. 시설설치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각란에 그 사유를 명기합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의 전매제한기간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2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 본문중 “탁아소로부터”를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로 하고, 동규칙 제22조의 제목“(유치원, 탁아소)”를“(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동조본문및 단서중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한다.

